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56 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송언석・구자근・권성동

박충권 • 이철규 • 정희용

임종득 • 장동혁 • 서지영
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15만원(1명), 35만원(2명), 65만원(3명)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,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.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·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(1명), 60만원(2명), 90만원(3명)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, 출산·입양 신고 공제대

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 (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 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"15만원"을 "3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"35만원"을 각각 "6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30만원"을 "5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50만원"을 "7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70만원"을 "1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	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
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	
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	
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,	
이하 이 조에서 "공제대상자	
녀"라 한다) 및 손자녀로서 8	
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	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	
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	
한다.	.
1. 1명인 경우: 연 <u>15만원</u>	1 <u>30만원</u>
2. 2명인 경우: 연 <u>35만원</u>	2 <u>60만원</u>
3. 3명 이상인 경우: 연 <u>35만원</u>	3 <u>60만원</u>
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	
30만원을 합한 금액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	③
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	
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	
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	
출세액에서 공제한다.	<u>.</u>
1.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	1
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:	

연	30	만원

- 2.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:연 <u>50만원</u>
- 3.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 우: 연 <u>70만원</u>
- ④ (생 략)

<u>50만원</u>
2
<u>70만원</u>
3
<u>100</u> 만원
④ (현행과 같음)